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(8공구)]

- 점검일시 : 2021.06.16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달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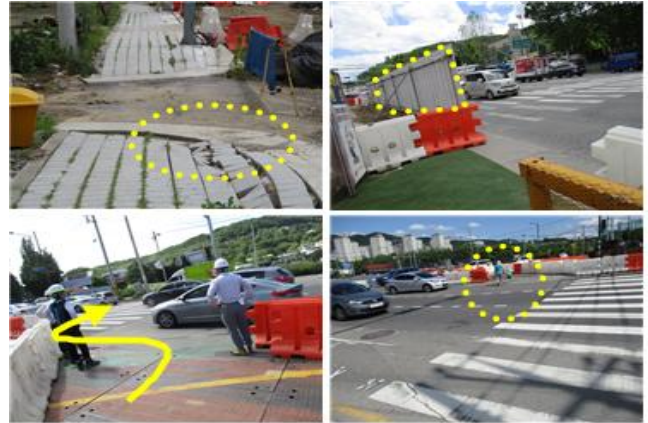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[양재IC]교통표지판의 선명도가 낮으니 보완 요하며,
 - 대모지하차도는 교통처리계획도는 교통표지판, 보행표지, 보행로의 우회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누락되었으며
 - 표지판의 위치가 차량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곳에 있거나
 - 버스정류장이 사거리에서 100 m도 이격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형태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니
 - 대모지하차도의 전반적인 교통처리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보행로가 단절되거나 방향이 양방향으로 갈래질 때는 방향을 표기 요함.
 -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된 곳은 전도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리 요함.
 - [대모]사거리웁스를 투명으로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인지하도록 정리
 - [매현]횡단보도와 대기위치가 서로 어긋나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치 요함.
 - [매현]포장현장 횡단보도부에서 복공부단차가 있고 방향이 어긋나 있으므로 통행시 차량과 간섭되므로 통제선이 필요함.
 - [매현] 교통우회처리시 신규포장과 복공단차부는 완만하게 조정하여 관리 필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[매현] H-pile 인발부 되메우기 관리철저 및 측면토사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 요함.
 - [대모]한전전력구 H-pile 시공위치 및 경사도 관리 요함.
 - [대모] 개포1단지 지하차도 pile 시공연직도 허용기준 여부 확인이 필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(조



립도),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토목부)

- [매현] 아스콘포장을 하는 장비가 롤러3종, 디스트리뷰터 등 다양한 장비가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작업을 진행중이며 신호수3인이 1인은 출입구, 2인은 현장에서 유도중임.

- 장비작업계획서에는 각 장비당 1인의 신호수 및 지휘자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
- 실제 장비는 여러대가 많은 작업자와 작업이 진행되므로 협착 재해 등의 발생위험이 높음.
- 여러장비가 동시작업시의 지휘자, 신호수 등의 배치, 작업구획의 설정, 작업의 순서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- 위 신호수는 장비운전자, 작업자 등이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하여 지휘 및 신호에 대한 유효성을 가지도록 관리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, 제38조(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토목부)

- [대모] 우수관 공사 현장은 굴삭기 및 작업자 다수 그리고 인근아파트 현장의 작업자들이 인접하여 동시 작업중이나
 - 동시 인접작업에 의한 위험도 도출, 관리방안이 계획서에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
 - 신호수의 위치가 운전자와 작업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등 신호수의 위치선정 및 작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신호수 투입시 장비위치, 작업자위치 등에 따른 신호수위치와 관리방법을 철저히 교육하고 투입관리 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○ 보건 관리(토목부)

- [매현] 신호수는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여름철 보건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함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(휴게시설의 설치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[매현] 롤러의 후방카메라 위치가 사각을 보지 못하므로 작업방법, 후방카메라 위치 등 교정 요함.
- [매현] 아스콘 포장 작업장의 롤러 들이 후방 카메라 위치가 사각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나 후방 작업원 경광등이 고장난 경우, 혹은 경고음의 음량이 주변 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지 확인하고
- 다양한 종류의 장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하는 현장이면서 특히 롤러의 경우 후방사각이 크게 존재하는 장비이므로 협착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p131 건설기계-001(건설기계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[대모] 굴삭기 전면유리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중이니 낙하비래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
- 상기 기계의 장비실명제카드 부착 요함.
- [대모] 항타기 아웃트리거 받침이 침하되어 있으니 부등침하에 의한 전도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지지지반 상태 관리 요함.



- 상기 항타기 아웃트리거 완전인출되지 않았으니 장비사용시 관리감독 요함.
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
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p131 건설기계-001(건설기계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[대모]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수전하여 작업하는 곳에서 분전반을 경유하지 않고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가설전선을 이용하고 있으며
 - 발전기의 접지, 가설전선의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감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요함.
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, 공통-19(이동식발전기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[매현] 연소중인 LPG가스관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요함.
 - 위험물보관소에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분리보관 요함.
 - 가스용기의 외기온도 관리 요함.
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, 공통-24(위험물보관소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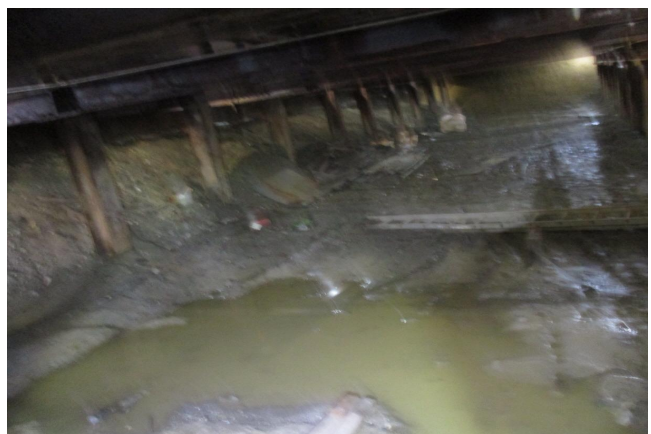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[매현] 상부 난간설치시 차로통제 순서 및 작업순서 등을 계획하고 관리하여 낙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관리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[매현] 복공판 하부는 체수 및 단차, 조도관계 등에 의한 발빠짐, 전도재해 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안전한 통로가 되도록 통행구역의 확보, 양수, 작업시 조도확보 등 조치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사면 안전(토목부)

- [대모] 사면부의 기존표면 보호블럭콘크리트는 강우시 활동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함.
 - 굴착후 불임토사가 원지반사면과 이격 균열 발생되어 강우에 대한 보호대책 요구 됨.
 - 개포2단지 U형 배수로는 사면유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로로 유입되도록 토공관리가 필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(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)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[매현] 복공하부 토사적치 부위는 공간확보후 되메우기 시공계획에 따라 다짐관리 시행이 필요함.
- [대모] 대모지하차도 작업공간들은 산재해 있으며 우기대비 침사지 및 배수로의 정비가 필요하고
- 자재를 낮은 곳에 배치하여 침수 되는 등의 위



험이 있으니 조치 요함.

- 우수관 작업구간 베드에 대한 시공계획, 상세도가 부족하니 보완요함. (콘크리트 베드 타설시 현재 콘크리트 블록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목재 사용 등)

- 파일 모래채움 등이 강우로 인하여 손상된 곳 보완 요함.

